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  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  
**의안 검토보고서**

**검토안건**

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  
전문위원 윤주현

#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47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4. 10.
- 회 부 일 : 2026. 4. 10.

### 2. 제안이유

-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(상·하수도)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4호)
  - (신설) 상·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
- 조례 내 오류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5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## ○ 기 타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2640)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2583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6693)
- 입법예고(2026. 2. 10. ~ 2026. 3. 3.) : 제출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·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, 감면 수준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됨.
-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216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금산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임.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